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국방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22일, 허영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23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허영의원)

현행법은 각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등에게 장

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유사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경우 대상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제적된 경우 현행법에서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장려금의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이 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도 없어 장려금의 지급 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려금을 지급 받은 군인들의 복무기강을 강화하고 장려금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2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등).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현행법령에 의하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규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반납규정은 국방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미반납시 강제징수에 관한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수령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환수 규정을 하위법령(국방부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단기복무장려금과 가산복무지원금 반납 통지에 대해 미반납시 보증보

협증권을 통해 환수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는 양자가 동일하나, 미반납시 강제징수 규정은 가산복무지원금 제도에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기복무 장려금 제도에도 동일한 반납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단기복무장려금은 학군·학사장교 중 일부만을 따로 선발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하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대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